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1. 13 선고 2020가단12432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0. 11. 4

판결 선고 2021. 1. 13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98,988,830원과 이에 대하여 2009. 9. 5.부터 2010. 12. 1.까지 연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5273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등 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0 . 5. 13. 피고는 원고에게 102, 827, 3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

나.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52142호로 항소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10. 12. 1. 피고는 원고에게 98,988,830원과 이에 대하여 2009. 9. 5.부터 2010. 12.1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피고는 다시 대법원 2010다108333호로 상고하였 으나, 2011. 1. 21.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(이하, 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'이 사건 판결금 채권'이라 한다).

다.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20. 7. 24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소는 토지관할을 위반하였으므로, 피고의 보통재판적인 의정부지방 법원 고양지원이나, 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.

그러므로 살피건대,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 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청구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, 원고의 주 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도 지참채무의 의무이행지 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갖는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98,988,830원과 이에 대하여 2009. 9. 5.부 터 2010 . 12. 1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 한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수정